

국립중앙의료원 신축·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

의안 번호	234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을 위해 '14년 서울특별시-보건복지부간 MOU를 체결하고, 사업부지 매매계약(원지동 부지), 도시계획변경 등 일련의 절차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, '19. 9. 8.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방적인 '이전 추진 중단' 언론발표 이후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.
- 나. '20. 7. 1. 서울시와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의 미 공병단 부지로의 신축·이전 관련 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 세부적인 이행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-복지부-국립중앙의료원이 모두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걸쳐 신축·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합의각서를 마련합니다. 본 합의각서는 「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체결하여야 하나,
- 라.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일 경우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3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, 협약서에 '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' 라는 조건을 붙임 후 체결할 수 있어 합의각서를 선행하였으며,
- 마. 조속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·이전으로 국립중앙의료원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과 중앙외상센터 설립 운영으로 우리시 감염병 대응 및 공공 의료서비스 역량을 높이고자 합의각서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합의각서 개요

- 명 칭 : 국립중앙의료원 신축·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- 보건복지부
- 목 적 : '20. 7. 1.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합의하여 조속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·이전으로 우리시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음
- 합의각서 체결일 : '21. 4. 5.(월)

나. 합의각서 주요 내용

- (도시계획 변경 주체) 미 공단부지 도시계획을 위한 입안도서 복지부 작성
- (원지동 매매 대금 반환)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원지동 매매 대금 납부한 금액 약 466억원 중 서울시가 기 지출한 용역 대금 약 6억원을 제외한 약 460억원을 반환
- (매매 대금 반환 방법) 서울시는 매매 대금을 분할하여 '24. 12. 1.까지 완납
- (공공병원 건립지원) 당초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에 따른 도심권 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'14. 12. 4. 협약서 내용 중 “을지로 부지 200병상 건립 지원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현 부지 옆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도심권 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'14년 협약서에 준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.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여 '21. 12. 31.까지 별도 협약
- (기타 추가지원) 위 공공병원 건립시 의료장비비 등을 지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원지동 부지 매매 대금 복지부 반환금

'21년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일부 반환 예정(자산관리과)

다. 합 의 : 합의각서 체결('21. 4. 5.)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재룡 (☎ 2133-7515)